

「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3. 4.15일 유인환의원의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 4. 16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평창군이 추진하는 각종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지원내용의 세분화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지원대상을 규정 (안 제3조)

- 노인여가복지시설, 관내 노인, 대한노인회 산하 관내 노인회,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, 효행장려사업, 노인복지증진시설

나. 지원내용 세분화 규정 (안 제4조)

- 노인여가복지시설(노인교실,노인복지관,경로당)운영비·간식비·난방비, 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비, 프로그램 운영비, 정보화 촉진 장비 및 시설,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기구
- 노인의 날 등 행사비,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, 급식, 여비 등 실비보상
- 효행장려 교육 및 효행 우수자 표창 경비
-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-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,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, 기타 저소득노인에게 설날, 추석, 노인의 날, 경로노인의 날, 어버이 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

다. 장수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규정(안 제5조)

3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조례로서 평창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중 장수수당,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,노인의 날 등 노인관련 행사, 차상위계층등 저소득 노인 지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
조례제정시 노인인구 21%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우리군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정책에 기본틀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으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※ 도내 제정시군 : 강원도, 강릉시, 인제군

